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
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('21.1.12. 공포, '22.1.13. 시행) 및 「지방공무원법」('21.10. 8. 공포, '22.1.13. 시행)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법령 정비
- 개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기존 인사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 개선

3. 주요내용

가. 임용권자의 범위에 지방의회의 의장 추가(안 제6조)

- 1)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주체에 지방의회의 의장 추가

나. 기타 미비사항 정비(안 제2조)

- 1) 개방형직위 지정 대상기관에서 누락된 '특별자치시' 추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특별시·광역시·도”를 “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”로 한다.

제6조제7항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[시·도의회 의장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의회의 의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]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개방형직위의 지정) 「지방 공무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 다)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 방형직위(이하 “개방형직위”라 한다)는 <u>특별시·광역시·도</u> 또 는 <u>특별자치도</u> 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 무원과 시·군 및 자치구별로 2 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 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 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 며,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경 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,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 야 한다.	제2조(개방형직위의 지정) ----- ----- ----- ----- <u>특별시·광역시·특별</u> <u>자치시·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6조(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 회) ① ~ ⑥ (생 략)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선발시험위원회 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 이 정한다.	제6조(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 회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----- ----- ----- <u>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</u>

의 의장[시·도회의의 의장 및
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
이하 같다)회의의 의장을 말한
다. 이하 같다]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342